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영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60

발의연월일: 2020. 6. 26.

발 의 자:김영호·오영환·진선미

박성준 • 양경숙 • 맹성규

한병도 • 박홍근 • 이장섭

정청래 • 이용빈 • 윤관석

문정복・박 정・문진석

남인순 • 이재정 • 서영교

이탄희 의원(19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생, 공무원, 근로자,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 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, 그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.

그러나 대통령령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의 실시기관, 교육 내용 및 주기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, 공익광고와 같은 홍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률에 직접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·편견 및 학대의 예방 과 방지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 도록 하고, 방송사업자와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 송출을 요청할 수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것임(안 제25조의3 신설).

법률 제 호
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6733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5조의3(홍보영상의 제작·배포·송출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·편견 및 학대의 예방과 방지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「방송법」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.
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「방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 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 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「방송법」 제2조제12호의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전광판으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 - ④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제3항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

있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2021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16733호 장애인복지법	법률 제16733호 장애인복지법
일부개정법률	일부개정법률
일부개정법률 <u><신 설></u>	일부개정법률 제25조의3(홍보영상의 제작・배포・송출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・편견및 학대의 예방과 방지 등에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「방송법」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한다.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「방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용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「방송법」 제2조제12호의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하여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 전광관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 전광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

 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

 영상을 전광판으로 송출하도록

 요청할 수 있다.

④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제3항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 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건 복지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